

사실복원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적이다

[밍후이왕] “정부가 파룬궁을 연마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적이다.

중국 고위층은 강택민 집단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줄곧 견해가 서로 달랐다. 1998년 당시 은퇴한 차오스(喬石)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위원장은 일부 노간부들을 조직해 파룬궁에 대해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벌인 끝에 파룬궁은 국민에게 백 가지 이익만 가져다주고 아무 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 보고서를 중공중앙정치국에 제출했다.

1999년 강택민은 소인배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파룬궁을 탄압하려고 했다. 박해가 시작되자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강택민을 제외한 6명은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강택민은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헌법을 위반하고, 권력으로 법을 대신해 강력한 권력으로 파룬궁 박해를 강력히 발동하고 추진했다.

당시 강택민은 “3개월 내에 파룬궁을 소멸하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록 파룬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강택민은 그해 10월 파룬궁 박해를 확대하기 위해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파룬궁을 ‘사이비종교’라고 비방했다. 다음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강택민의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논설위원의 기사를 실었다. 강택민의 개인적 의견과 ‘인민일보’ 논설위원의 글은 법이 아니므로 파룬궁 명예 훼손, 비방 등 법적 후과를 감당해야 한다.

■ 인대(人大) <결정> 과 양고사법 해석은 파룬궁과 관련이 없다

강택민이 파룬궁을 비방한 후 며칠 뒤인 1999년 10월 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사이비종교 조직 단속,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는데, 이 결정에는 파룬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권력 기구이자 유일한 입법권력 기구이므로 인민대표대회의 결의만이 법적 의의가 있다. 그런 후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두 차례에 걸쳐 ‘사이비종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한 범죄 사건 처리에 구체적인 법률을 적용하는 데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양고 사법해석)’을 내놓았지만, 마찬가지로 파룬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형법의 근본원칙은 ‘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양고 사법해석은 파룬궁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중공 언론의 거짓말에 많은 사람은 파룬궁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했다.

■ “정부가 파룬궁을 연마하지 못하게 한다”는 중공의 거짓말이다

2000년公安부가 발표한 ‘사이비종교조직의 인정과 금지에 관한 약간의 문제 통지서’[공통자(2000) 39호] 문건에 14종의 사이비종교조직을 명확히 밝혔는데 파룬궁이 그중에 없었다는 점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

2005년에公安부,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공포한 ‘사이비종교조직의 인정과 금지에 관한 통지’[공통자(2005년) 39호] 문건에 14종의 사이비종교조직에 파룬궁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국무원 판공청은 당연히 국무원을 대표한다. 중국 현행법상 국무원은 중국 중앙인민정부(중국 정부)로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이다. 위의 통지는 국무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이비종교 명단에 파룬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국무원이 강택민 일당의 파룬궁 비방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중국 정부)은 파룬궁을 연마하지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파룬궁을 연마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은 중공이 퍼뜨린 거짓말이다.

2011년 3월 1일, 류빈제(柳斌傑) 신문출판총서장이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 50호’ 문서에는 1999년에 파룬궁 서적 금지령을 폐지하고 중국에서 파룬궁 관련 서적 자료를 인쇄, 소유하는 것이 합법임을 명시했다.

2017년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은 또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즉 ‘2017년 양고 사법해석’인데 이 사법해석은公安부의 연서를 거치지 않았다. 다만 법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사법해석을 할 수 있을 뿐 다른 행정기관(公安부)의 권한을 위임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사이비종교 ‘인정의견’에 관한 해석 규정은公安부를 넘어 지방시급 이상의公安기관의 권한과 설정기능을 부여받은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월권과 위법행위로서 법률상 성립할 수 없다.

일본평론원 중국 생체 장기적출 현장 목적



▲ 6월 20일, 쟈위안초는 동경에서 대기원인터뷰를 받았다.

[명후이왕] 쟈위안초는 15년전 무의식간에 중국의 생체장기적출의 내막을 요해하게 됐다. 쟈위안초는 금년 6월 20일 동경에서 대기원의 인터뷰를 통해 2007년 그가 중국의 생체장기적출 현장을 목격한 상황을 말했다. 쟈위안초는 한 인터넷 유명인으로서 트위터에 22만 구독자가 있으며 이미 10여권의 경제방면의 저작을 발표했다.

2007년에 쟈위안초의 친구의 형은 간병이 악화되어 장기를 이식하지 않으면 얼마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친구는 중계를 통해 아주 빨리 중국에서 제공자를 찾았고 곧바로 수술 받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수술전 병원에서 준비한 일종 백담백의 혈액제품이 가짜임이 발견돼 수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친구는 쟈위안초에게 일본에서 백담백을 구입해 북경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이때문에 쟈위안초는 중국의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적출의 검은 내막을 요해할 수 있었다. 아래는 인터뷰의 일부분 내용이다.

기자: 쟈위안초 선생님, 당신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쟁위안초: 북경에 도착한후 저는 약품을 병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하루전에 친구의 형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접대를 책임진 의사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제공자는 바로 옆칸에 있는데 당신이 한번 보겠습니까?” 그가 커튼을 열자 저는 제공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볼수있었는데 한 21세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마약을 놓았기에 보기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의사는 일본에서 유학한적이 있었기에 일본어에 능통했습니다. 의사는 제공자는 나쁜사람이고 사형판결을 받은 죄범이라며 어차피 죽을 것인데 차라

리 죽기전에 공헌하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젊기에 간장이 매우 건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고 묻자, 의사는 “공포조직의 일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그는 도대체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캐묻자 의사는 “파룬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중 환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수술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자: 그 청년을 봤을때 그는 당시에 어떤 모습이 었습니까?

쟁위안초: 저는 그가 거기에 누워 있을때 손과 발에 모두 붕대를 감은 것을 보았는데 하루전 그의 두 손과 발의 근육을 모두 끊어 버렸던 것입니다. 의사는 저에게 그가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사람이 두려울 때면 신체가 움츠어들면서 장기의 품질에 영향주기때문에 그들이 청년에게 근육절개 수술을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기자: 장기이식을 할때 그는 살아 있었습니까?

쟁위안초: 당연하지요. 제가 가서 그를 볼때 그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장기를 적출하면 이 사람은 죽거든요. 때문에 생체에서 적출한다고 하지요. 장기를 적출하는 동시에 수술을 하면 효과가 가장 좋지요. 시체는 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기자: 중국관원도 참여했습니까?

쟁위안초: 당연하지요. 중국관원의 참여가 없었다면 장기이식은 할 수 없으며 많은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우리는 특별출구를 사용했는데 이는 단지 전문 고급관원에게만 마련된 비밀 지하통로였기에 저는 다른 차량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를 접대한 고위관 외에 또 총을 든 무장 경찰 4명이 있었습니다. 공항부터 북경까지 무장경찰차가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고위관이 무슨 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꽤나 권리가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공항에까지 마중나왔을때 전문차가 직접 비행기 아래까지 몰고 들어왔고, 그다음 해관직원이 비행기 아래에까지 와서 나를 위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후 전문차로 “귀빈구”라고 적힌곳으로 나갔는데 모두 전문용 통로와 비밀통로를 지났습니다. 이 일은 정말 아주 잔인합니다. 3000만엔 (일본돈) 을 지불하고도 두사람의 목숨을 바쳤는데 누구한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